

# 민원서류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처리기록물 등록번호

(앞쪽)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6.1.27.>

## 제조소 [ ] 위험물 저장소 [V] 용도폐지신고서 취급소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설치자	성명 <u>고정공제회</u> 주소 <u>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전화번호 : 02) 584-5613 (팩스 3004) 010-4142-2592</u>		
설치장소	<u>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15-4 (동일로 143)</u>		
제조소등의 구분	<u>취급소</u>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u>취급소</u>	
설치허가 신청연월일 및 허가번호	<u>2005년 12월 22일 / 제 23-01-052-051222호</u>		
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u>2006년 1월 13일 / 제 23-054-060113호</u>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u>경유 4,000L</u>	지정수량의 배수	<u>배</u>
폐지연월일	<u>2020년 8월 31일</u>		
폐지사유 및 방법	<u>2021년 상반기 재검측에 따른 농도상대 유지</u>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성명

고정공제회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KT강북지사 공릉지점)			
①완공검사 연월일 및 번호	2006년 1 월 13 일 제23-0154-060113호		
②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③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옥내탱크저장소
설 치 자	④성 명	KT대표이사	⑤생년월일
	⑥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⑦설치장소	노원구 공릉동 375-4 (KT강북지사 공릉지점 )		
⑧설치 또는 변경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005년 12 월 22 일 제23-0154-051222호		
⑨비 고	<p>※허가사항</p> <p>-제4류 옥내탱크 경유 4,000ℓ 1기</p> <p>- 완공검사필증 재교부(분실)→2015.05.21.</p>		
<p>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5월 21일</p> <p style="text-align: right;">노원소방서장 </p>			
공 지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li> <li>2.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3.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4. 제조소등을 양수하거나 인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li> <li>5. 완공검사필증은 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li> </ol>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지점 )

등록번호 : 178-82-00202

법인명(단체명) : 교정공제회

대표자 : 권민석

개업연월일 : 2018년 08월 31일      법인등록번호 : 114622-0000477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82(공릉동, KT 공릉지점)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13층(역삼동)

사업의종류 : 업태 부동산임 및 임대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방)

발급사유 : 대표자명변경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kyojung10@bill36524.com

2020년 01월 29일

노원세무서장



##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서

본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서(이하 “본 변경계약서”)는 2018년 [ 8 ]월 [ 31 ]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임대인: 교정공제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13층(역삼동)  
임차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 전문 -

임대인은, 임대인 명의의 2018년 8월 31일 임대차계약 승계확인서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리얼티 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기존 임대인”)와 임대인 사이에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75-4{(도로명주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82} 소재 토지, 그 지상 건물 및 부속설비에 관하여 2018년 8월 31일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이 거래종결됨과 동시에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위 토지, 그 지상 건물 및 부속설비에 관하여 2011년 12월 23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계약서”) 상의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건 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에 기존 계약서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이하 “본 변경계약서”)이라고 하고, 본 변경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이후의 임대차계약 전체를 “변경후 계약서” 또는 간략히 “본 계약서”).

- 다음 -

제1조 【기존 계약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전세권설정등기 및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

기존 계약 제3조 제1항 내지 제7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3조에 다음 각 항을 신설한다.

1. 임대차계약기간은 본건 매매계약 종결일(이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0]년 [ 8 ]월 [3]일(이하 “임대차만료일”)까지로 한다.
2. 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이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후 계약 제17조 제3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위 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은 위 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최장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만큼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위 통지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임대인은 위 계약기간 연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임대인은 임대차개시일에 즉시 임대차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제 1순위 전세권[전세보증금 : 일억사천칠백만원(₩147,000,000) 및 제2순위 전세권[전세보증금 : 사천이백팔십만원(₩42,800,000원)]을 유지시키고, 제3순위로 근저당권[피담보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임대인에 대한 채권, 채권최고액 : 이십오억팔천팔백육십사만원(₩2,588,640,000원)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20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42,800,000원을 제외한 2,157,200,000원의 120% 상당금액] 을 설정해 주고, 제4순위로 임대인의 매매대금 차입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등기설정, 변경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명확히 하면, 위 전차인 및 임차인의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취득 자금을 대출한 대주(단)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대주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임대인의 다른 일체의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한다.
5. 임차인은 본 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거나 해지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위 인도 전에 반출해 갈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는 당시의 현상 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기존 계약 또는 본 변경계약의 각 임대차개시일 당시의 상태나 제3자에 대한 임대가 가능한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어떤 물건도 반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임차인은 본 계약이 기간만으로 인하여 종료하거나 해지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전세권 및 제3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등기말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제2조 【기존 계약 제4조(임대차보증금)의 변경】

기존 계약 제4조 제1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4조 제4항은 삭제하며, 제4조의 나머지 각 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한다.

1. 본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임대차보증금”)은 별첨2.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세부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다.
5. 임대인이 본건 매매계약에 따라 기존임대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함으로써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변경후 계약이 기간만으로 인하여 종료하거나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변경후 계약 제3조 제5항에 따라 명도하여야 하며, 변경후 계약 제3조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변경후 계약 제3조 제4항에 정한 전세권설정등기 및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받는다. 단, 변경후 계약이 기간만으로 인하여 종료하거나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이 소멸하는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등 채무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목적물 명도와 함께 위 채무를 임대인에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최고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잔존 임대료 등 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할 수 있다.

### 제3조 【기존 계약 제5조(월임대료)의 변경】

기존 계약 제5조 제1항, 제3항을 각 삭제하고, 다음 제1항을 신설하며, 기존 계약 제5조 제2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한다.

1. 본 계약의 월임대료는 별첨2.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세부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임대료를 매월 10일까지(단, 10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이후의 첫 은행영업일) 아래에 기재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계좌개설 은행 및 지점: 농협은행 남서춘지점
- 계좌명의: 농협은행 조정공제회
- 계좌번호: 3너 - 0237-3418-81

#### 제4조 【기존 계약 제6조(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조정)의 삭제】

기존 계약 제6조 전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다.

#### 제5조 【기존 계약 제7조(납부연체)의 변경】

기존 계약 제7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월임대료 등 본 계약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납부금액을 지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그 지체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18%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기존 계약 제14조(유지 수선 및 공사 관리)의 변경】

기존 계약 제1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4조 나머지 각 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한다.

#### 제7조 【기존 계약 제17조(계약해지권)의 변경】

기존 계약 제17조 제2항, 제4항을 각 삭제하고, 그에 갈음하여 제17조에 다음 각 항을 신설하며, 기존 계약 제17조 나머지 각 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한다.

2.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일로부터 임대차만료일(본 변경후 계약 제3조 제3항에 기하여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있어 그 임대차만료일을 포함함, 이하 본 조에서 같다)까

지 본 계약상 예정된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일로부터 임대차만료일까지 본 계약상 예정된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 【기존 계약 제18조(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의 변동)의 삭제】**

기존 계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을 아래 조항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1. 임대인이 제3자(이하 “양수인”)에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임대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별첨 0. “임대차계약 승계확인서”의 양식에 따른 승계확인서를 제출받아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동의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 매각일로부터 임대차만료일까지 본 계약상 예정된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 【기존 계약 제19조(명도 및 원상복구 등)의 변경】**

기존 계약 제19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19조에 다음 각 항을 신설한다.

1. 임차인(및/또는 전차인,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임대차만료일(단, 변경후 계약 제3조 제2항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날을 의미하고, 본 변경후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말일을 의미한다. 이하 본 조에서 “명도기한”)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기존 계약에 첨부된 별첨2.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세부내역은 본 변경계약에 첨부된 그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며, 기존 계약에 첨부된 별첨3. 임대차기간별 월 임대료 조정액 및 별첨4. 임대차계약승계확인서를 각 삭제하기로 한다.

### 제13조 【본 변경계약의 효력 등】

1. 본 변경계약은 본건 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변경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며, 본 변경계약서와 기존 계약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변경계약서가 우선하며, 본 변경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적용된다.

[ 기명날인은 다음페이지에 ]



본 변경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임대인들과 임차인이 기명날인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임대인 교정공제회

법인등록번호 : 114622-00004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13층(역삼동)

대표이사                     권 기 훈                    



임차인 주식회사 케이티

법인등록번호: 110111-1468754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대표이사                     황 창 규                    

